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연 구 직 및 지 도 직 공 무 원 의
임 용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12조제4항)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나.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경력 인정 확대(안 제12조제6항)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을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시보임용 기간 및 제12조”를 “이 영 제12조”로, “재직하고”로 본다”를 “재직하고로 본다”로 한다.

제1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 3년”을 “3년”으로 한다.

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한 사람이 이미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 · 제2호 다목 · 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 · 제2호다목 ·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 도사를 신규 임용할 때에는 6개 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u>기간</u> <u>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u>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조(시보임용) ----- ----- ----- ----- ----- ----- ----- ----- <u>기간</u> <u>의 근무성적 · 교육훈련성과와</u> <u>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u> <u>하여</u> -----.
제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 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에게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를 “「 <u>지</u> <u>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u> <u>임용 등에 관한 규정</u> 」 제7조의 <u>시보임용 기간 및 제12조의 승</u> <u>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u> <u>직하고</u> ”로 본다.	제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 축 등) ----- ----- ----- ----- ----- ----- <u>이 영</u> <u>제12조</u> ----- ----- ----- <u>재</u> <u>직하고로 본다.</u>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1. 2. (생략)

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나. 둘째 자녀 이후의 자녀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

4. ~ 6. (생략)

⑤ (생략)

⑥ 임용령 제3조의5제2항에 따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한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기간과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재직연수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3년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